

제322회

임시회  
2024. 5. 22.(수)

# 행정위원회 안건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 차 례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과) ..... 1
2.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과) ..... 14
3.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2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5. 14.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6
----------	---------

제출년월일 : 2024. 5. 14.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5.17.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영동군 자치법규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용어변경
  - “문화재” →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3. 근거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 첨 부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4조(「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5조(「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공원/관광/문화재”를 “공원/관광/국가유산”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답례품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11. (생략)</p> <p>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3.·14. (생략)</p>	<p>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 <p>13.·14. (현행과 같음)</p>

### 2.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u>무형문화재</u> 제6호인 설계리농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무형유산</u> ----- ----- ----- -----.</p>

### 3. 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영동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u>문화재로</u>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u>문화유산</u> <u>으로</u> -----.

### 4.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 <u>문화재에 대한 감면</u> ) (생략)	제4조( <u>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u> )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⑧ ~ ⑬ 생략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5. 14.

#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7
----------	---------

제출년월일 : 2024. 5. 14.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장 체제에 맞게 위원회 위원 정비가 필요한 영동군 조례 2건에 대해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획감사과)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
-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미래전략과)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  
미래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첨 부 1.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을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2조(「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미래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u>기획감사과장</u>, <u>행정과장</u>, <u>재무과장</u></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미래기획실장</u>, <u>기획감사과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2.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u>농업기술센터 소장</u>, <u>미래전략과장</u>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일라이트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미래기획실장</u>, <u>농업기술센터소장</u>, ----- ----- ----- -----.</p>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5. 14.

#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8
----------	---------

제출년월일 : 2024. 5. 14.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12.29.)으로 납부 지연가산세(舊 증가산금)가 미적용되는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일반우편 송달기준 변경(안 제5조)  
(현행) 30만원 → (개정안) 45만원

## 3.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첨 부
1.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조례 제 호

##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 <u>45만원</u>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재무과 세정팀장 진 순 현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